

(주)HB저축은행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년 6월 26일내로 KB국민카드 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KB국민카드 주식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감독규정』에 따라 (주)HB저축은행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KB국민카드 주식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KB국민카드 주식회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(주)HB저축은행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(주)HB저축은행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(<http://hbsb.c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 양도예정채권 명세

소멸시효 완성여부 : 여/부

(단위 : 원)

	대출과목	고객명	KB국민카드 채권 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 비용	여/부
1	일반자금대출	김*성	K1826937600002	13,659,441	13,659,441	-	-	부
2	일반자금대출	김*성	01903805761170	13,000,000	9,466,474	-	-	부
3	일반자금대출	김*성	01903805793230	6,500,000	4,694,450	-	-	부
4	일반자금대출	김*겸	K2789390900001	5,183,598	5,183,598	-	-	부
5	일반자금대출	김*겸	01453807875629	7,100,000	3,839,363	-	-	부
6	일반자금대출	김*길	K21380173	4,888,934	4,888,934	-	-	부
7	일반자금대출	김*길	01743800751163	19,000,000	13,683,885	-	-	부
8	일반자금대출	김*환	K8382318100001	3,829,727	3,829,727	-	-	부
9	일반자금대출	서*나	K3191330200002	3,670,387	3,670,387	-	-	부
10	일반자금대출	이*준	72163800973299	1,400,000	1,384,643	-	-	부
11	일반자금대출	이*은	K20780115	2,822,131	2,822,131	-	-	부
12	일반자금대출	이*은	82401604231739	6,000,000	497,527	-	-	부
13	일반자금대출	이*이	K2334097000002	5,805,469	5,805,469	-	-	부
14	일반자금대출	이*이	00353806557168	15,800,000	7,661,303	-	-	부
15	일반자금대출	이*성	K2091307900001	6,761,744	6,761,744	-	-	부
16	일반자금대출	이*성	00193807799994	10,000,000	9,225,062	-	-	부
17	일반자금대출	이*성	00193807811258	3,800,000	3,766,249	-	-	부
18	일반자금대출	최*련	72163800117619	2,600,000	2,096,329	-	-	부
19	일반자금대출	황*영	K09530854	2,619,410	2,619,410	-	-	부
20	일반자금대출	황*영	00223802597888	13,400,000	7,246,290	-	-	부

	대출과목	고객명	KB국민카드 채권 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 비용	여/부
21	일반자금대출	김*범	00483808379196	7,000,000	191,514	501	-	부
22	일반자금대출	김*범	00483810391317	10,000,000	8,207,401	21,564	-	부
23	일반자금대출	김*범	K2525700700002	5,724,606	5,724,606	839,542	-	부
24	일반자금대출	장*현	K2098531000001	4,997,230	4,997,230	231,704	-	부
25	일반자금대출	한*선	00353807855465	5,000,000	3,658,872	49,259	-	부
26	일반자금대출	한*선	00353807857708	3,000,000	2,195,318	29,554	-	부
27	일반자금대출	한*선	00353808599746	5,000,000	4,948,854	80,148	-	부
28	일반자금대출	한*선	00353808661568	10,000,000	9,897,996	161,168	-	부
29	일반자금대출	한*선	09452532	2,662,864	2,662,864	500,449	-	부
30	일반자금대출	홍*경	42965847	6,494,313	6,494,313	891,106	-	부
31	일반자금대출	구*열	K0406980700001	2,410,997	2,410,997	81,331	-	부
32	일반자금대출	구*열	02553800969808	3,900,000	3,900,000	6,955	-	부
33	일반자금대출	구*준	K1664695500001	1,886,042	1,886,042	326,196	-	부
34	일반자금대출	김*현	08954574	13,917,079	13,917,079	1,515,525	-	부
35	일반자금대출	김*현	00223806771336	3,700,000	3,677,544	58,386	-	부
36	일반자금대출	이*원	K3118732900002	5,991,472	5,991,472	966,980	-	부
37	일반자금대출	이*원	00773807313750	2,000,000	1,980,391	18,989	-	부
38	일반자금대출	이*희	27224036	11,493,071	11,493,071	2,007,278	-	부
39	일반자금대출	이*은	K2031424300001	12,527,198	12,527,198	4,172,118	-	부
40	일반자금대출	이*은	K2031424300002	6,086	6,086	-	-	부
41	일반자금대출	나*선	80563492	15,898,063	15,898,063	-	-	부
42	일반자금대출	박*구	23137738	916,716	916,716	-	-	부
43	일반자금대출	한*우	31461298	8,353,340	8,353,340	-	-	부

\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\*\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\*\*\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## 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### ■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1670-678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	(금융회사)	(채무자)	(금융회사)	(채무자)
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▶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▶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▶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▶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